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경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84
----------	-------

발의년월일 : 2020. 10. 28.

발 의 자 : 이경애 의원 등 14명

1. 주 문

-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수용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조○○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 시설수용을 도모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음. 보호수용의 도입 문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법제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미흡한 점, 새로 도입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의 재범방지 효과가 미미한 점, 보호수용을 둘러싼 논란은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간의 충돌 관점에서 재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함.
- 아동에 대한 인권의 유린과 생명의 침해는 불가역적이고,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는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전방위적임. 또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아 형기를 마친

범죄자들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성공적인 재사회화 후 사회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 헌법은 처벌과 보안처분을 구분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형벌과 보안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부가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
또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선진국에서도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따라서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형기종료 후라도 보호수용의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 적용시기를 사회복귀시점으로 하여 소급논란을 불식시키는 등으로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흉악범의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결의안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법의 자비를 베푸는데 엄격해야 하고 형사사법의 불관용의 원칙 아래 적정한 형벌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법부는 거시적 안목에서 체계적인 형사사법이 아닌 그 때 그 때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로 특별법 입법을 남발해 왔고, 사법부는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지 않는 처벌을 종종 해왔다. 이에 안산 아동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조○○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호수용법 제정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출소자의 사회 복귀에 대비하는 새로운 법제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보호수용이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높은 재범의 위험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다. 보호수용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여부이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자유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열위에 놓여있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압도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한다. 피해아동이 받는 상처는 불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는 심리적·육체적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아동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사태 앞에서 현재의 형사법적 대처는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큰 괴리가 있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피해자의 가족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지역사회 안전까지 위협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재범률이 14%에 이르고, 2020년 법무부가 발간한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성범죄사범의 재범률이 6.3%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들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범죄를 방조하고 양산하는 것과 다름 없다. 현실화될 수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잠재적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인권침해에 대해 등한시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 형사법은 피고인의 인권 보장, 즉 적정절차 원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에 대한 보장이 미약하다. 또 새로 도입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인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성범죄알림이 등의 재범방지효과 역시 미미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형사사법의 동향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해 고민하고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사전에 범죄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이나 보호수용을 둘러싼 논란은 범죄자의 인권 보장 관점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의 충돌 문제로 재구조화하여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은 헌법적 가치의 핵심이므로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사회보호법은 2005년 이중처벌 논란으로 폐지되었지만 우리 헌법은 명문상 처벌과 보안처분을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도 형벌과 치료감호처분, 형벌과 보안처분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집행 상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부가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독일,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수용하는 보호수용과 유사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바, 수용기간에 제한이 없거나 최장 10년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수용의 내용보다 더 강력한 편이다.

따라서 살인, 아동성폭력 등 중대범죄에 한정하고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등 보호수용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 적용기준 시점을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사회복귀 시점으로 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면,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흉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는 단호해야 한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살인, 성폭력 등 흉악범죄로부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 1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